

소액주주, 대통령실 탄원 행렬… KG그룹 등 재계 불안감 확산

“주주 가치 훼손” 내세워 반발
한화·롯데 주주들 집단행동
상법 개정 뒤 행동주의 확산
재계, ‘경영권 방어책’ 촉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이 개정 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로 주주가 추구되면서 최근 소액주주들이 잇따라 ‘주주 가치 훼손’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기업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재계는 경영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KG그룹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2일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 주주연대는 KG그룹 계열사들이 불공정 거래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 주주 가치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행동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KG그룹 본사 전경.

/KG그룹



한화그룹 본사 사옥 전경.

/한화그룹

를 통해 결집한 KG그룹 6개 상장사(KG케미칼, KG에코솔루션, KG모빌리티, KG스틸, KG이니시스, KG모빌리티) 소액주주들의 공동 대응으로 이뤄졌다. 탄원서에는 2017년 KG제로인과 KG네트웍스의 합병 과정에서의 편법적 경영 승계, KG에코솔루션이 2차 전지 사업을 위해 정관을 변경한 뒤 2년 만에 이를 철회한 투자자 기만 정황,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교환사채(EB)로 전환해 장부가치의 20% 수준인 헐값에 교환가액을 설정한 것에 대한 배임 가능성 등이 담겼다.

이에 KG그룹은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에 아쉬움을 표한다”며 “그동안 모든 경영활동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했으며 앞으로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소액주주의 움직임은 KG그룹만이 아니다. 한화그룹을 향한 소액주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한화 1우선주(한화우)를 놓고 한화우 소액주주연대는 1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한화는 “보통주, 3우선주 주주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한화우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7일 “한화가 주주 가치 제고라는 명분 뒤에 숨어 실질적으로는 상장폐지를 통해 소액주주를 배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자사주 소각 후 상장 유지 요건(20만주)에 단 967주가 부족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의도된 결과”라며 “상장폐지 수순에 앞서 지난해 7월 진행된 공개매수 가격(4만5000원)은 당시 순자산가치(BPS)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화가 주주들과의 마찰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3월 3조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소액주주들을 달래고자 유상증자 규모를 2조3000억원으로 줄이고,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소액주주들이 15%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롯데렌탈도 소액주주 연대의 압박을 받고 있다. 롯데렌탈이 2100억원 규모의 제3차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자 소액주주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현재 시장가 대비 낮은 가격에 발행 가격이 책정돼 기존 주주의 권익이 침해된 반

면 대주주의 지분 매매 가격은 시가의 2.6배에 매각돼 소액주주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소액주주들이 잇따라 단체 행동에 나서서 것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의 영향이 크다.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감원과 공정위가 롯데렌탈의 유증과 한화 우선주의 상폐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양사의 사태는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 통과 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를 강제로 투기세력 등의 감시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에 우려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외부 세력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고, 경영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경영 판단 원칙 도입이나 배임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형사리스크 걷어내야”… 김태년, 특별배임죄 삭제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략적 판단·투자 위축 부작용
형법에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코스피5000 뒷받침할 입법 취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정부·여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으로 인해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특별배임죄란 상법에서 특정 유형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회사 임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특별배임죄의 경우 이사 등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한 형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의적인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해 기업의 전략적 경영판단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태년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로 배임죄 고발에 노출되는 구조에 직면해 있다면서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에 우려를 드러냈다.

일각에선 이러한 구조가 결과 중심의 처벌로 이어지며, 경영 위축과 보수적 투자 행태가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입법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2차 상법 개정안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리아프리미엄시대를 위한 상법의 보완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법 관련 공청회가 있었다. 이 공청회를 통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또 감사위원도 분리 선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집중투표제는 이미 상법에 규정돼 있는데, 회사 정관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것이다. 그 단서를 떼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는 말 그대로 경영진을 감시하라고 있는 조직 아닌가. 이것이 대주주나 지배주주에 의해 장악돼 버린다면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나”라며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이번 2차 상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더 이상은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 소액 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이 두가지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285@

“낮은 틀부터 깨야”… 대한상의, 신산업 규제 개정안 54건 제출

벽 없는 연구실은 인정 못 받아
태양광 사업, 농지법에 막혀
진입장 거리 규제에 공장 멈춰

대한상공회의소는 ‘새로운 성장 시리즈 신산업 규제 합리화 건의서’를 통해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신(新)산업 내구(舊)규제’ 54건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과 제도를 만들 당시에는 딱 맞는 규제였지만, 새로운 성장

체계를 만드는 지금은 낮은 규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벽에 막힌 기업 연구실이다. 첨단 전략산업은 기술변화에 따라 인력의 재배치가 빈번하고 연구실, 사무실 등 아이디어 융합을 위해 업무의 벽을 허물어 가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구법상 ‘고정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공간’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

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4면의 콘크리트 벽과 출입문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을 위해 별도의 의미없는 공간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현실과 맞지 않다는 뜻이다.

반도체 공장에 ‘수평 40미터 간격’으로 획일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진입장 규제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공장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가스룸과 외부오염물질 유입을 극도로 통제하는 클린룸이 크게 위치해 있어 ‘수

평거리 매 40미터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제가 반도체 공장의 소방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지적돼 왔다. ‘일률적인 물리적 간격을 정하는 것보다 시설의 기능에 맞게 진입창이 배치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새 정부가 방점을 찍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논밭 위의 태양광’이라 불리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식물을 강렬한 태양광으로부터 보호하고 전기도 만드는 1석 2조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남태평양 국가들에서도 각광

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법상 농토 이외의 일시적 타용도 사용 허가기간이 최장 8년으로 제한돼 있다.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당초 농지의 본래 목적인 식량 생산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비농업적 용도 전환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규정이지만, 지금은 에너지 전환과 농촌 소득 다각화가 중요한 시대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한기 농가의 부수입이 되기도 해 농가에서도 보급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승용 기자 lsy2665@